

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수의직렬(수의사 면허 소지자)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

(안 제2조제4호 및 안 별표 3)

(현행) 250,000원/월 → (개정) 500,000원/월 (+ 250,000원)

나. 그 밖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띄어쓰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: 별표 1의 지급구분표
2.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: 별표 2의 지급구분표
3. 보건진료직렬 공무원(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포함) : 월 250,000원
4. 수의직렬 공무원(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한다) : 별표 3의 지급구분표

제3조(장려수당)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·하수·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, 시체 화장(火葬) 업무 및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·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.

제4조(직급보조비 등)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(소재지가 구미시의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)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,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.

■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[별표 1]

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(제2조제1호 관련)

구분	전문의	일반의
월수당 지급액	월 909,000원	월 818,000원

비고 : 전문의는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,
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로 한다.

■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[별표 2]

일반임기제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(제2조제2호 관련)

자격 구분 근무연수별	전문의	일반의
5년 이상	월 1,312,000원	월 973,000원
4년 이상	월 1,306,000원	월 967,000원
3년 이상	월 1,300,000원	월 961,000원
2년 이상	월 1,295,000원	월 956,000원
2년 미만	월 1,289,000원	월 950,000원

비고 : 1.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.
2. 전문의는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,
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로 한다.

■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[별표 3]

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(제2조제4호 관련)

연도별	지급액	비고
2022년 지급분	월 300,000원	
2023년 지급분	월 400,000원	
2024년 이후 지급분	월 500,000원	

비고 : 연도별 지급액은 해당연도에 최초로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함.

■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[별표 4]

장려수당 지급구분표
(제3조 관련)

지급대상	지급액
시체 화장(火葬) 업무 및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·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	월 180,000원
분뇨·하수·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	월 250,000원

관계법령

□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
제14조(특수업무수당)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,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. [전문개정 2020. 1. 7.]

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[별표 9] <개정 2021. 3. 30.>

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(제14조 관련)

구분	수당명	지 급 대 상	지급액 및 지급방법
	2. 의료 업무 등의 수당	라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·축산물의 검역업무와 「축산물위생 관리법」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[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(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) 및 「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(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)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]	월 250,000원 (광역시·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·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,000원 초과 월 500,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·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)

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으로 세출증가 요인 발생
(안 제2조제4호 및 안 별표 3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수의직렬 공무원 현원 3명에게 최고액(500,000원/인당)으로 지급하는
경우 인상분의 연평균 지급액이 1억 원 미만임.
- 산출내역

내 용	산출내역	금 액	비 고(인상분)
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	기존) 250천원/월×3명×12개월	9,000천 원	+ 9,000천 원
	변경) 500천원/월×3명×12개월	18,000천 원	

4. 작성자

- 총무과 인사담당 홍 다 영(054-480-6775)

소 관 부 서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박 주 영
	담 당	강 유 현
	담 당 자	홍 다 영 (480-6775)